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. 12. 9 선고 2015가단105979 판결 [건물매수청구의 소1)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피 고 H

변론 종결 2015. 11. 25.

판결 선고 2015. 12. 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A에게 5,250,000원, 원고 B, C, D, E, F, G에게 각 3,5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.

4. 18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들은 피고 소유인 파주시 I 대 268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지상에 있는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의 공유자로, 법정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,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(원고는 2015. 11. 25. 제2차 변론기일에 소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).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장지용

1) 반소인 2015가단113567 지료청구 사건은 피고의 반소취하로 종결되었다.